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번지 일원 (검암역세권 B-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5층, 5개동, 총 6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주택형	84A	84B	84C	計	
전체 세대수	234	246	121	601	
국가유공자	3 (15)	4 (20)	2 (10)	9 (4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0)	2 (10)	1 (5)	5 (25)	
10년 이상 복무군인	4 (20)	4 (20)	2 (10)	10 (50)	
중소기업 근로자	4 (20)	4 (20)	2 (10)	10 (50)	
북한이탈주민	2 (10)	2 (10)	1 (5)	5 (25)	
우수선수	2 (10)	2 (10)	1 (5)	5 (25)	
장애인	인천광역시	2 (10)	2 (10)	1 (5)	5 (25)
	서울특별시	2 (10)	2 (10)	1 (5)	5 (25)
	경기도	2 (10)	2 (10)	1 (5)	5 (25)
計	23 (115)	24 (120)	12 (60)	59 (295)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표기 : **당첨예정자** / 괄호 : (예비대상자)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구분	분양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6.05.07 (목) 예정	• 일간신문 공고 및 검암역자이르네 공식 홈페이지 (www.검암역자이르네.com) • 분양문의 : 1833-2595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5.18 (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9:00~17:30) •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6.05.27 (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입주자모집 승인 전으로 공급금액 및 분양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 승인일에 따라 분양일정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 재안내 예정)
- 본 청약안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10.31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청약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입주자저축 불필요)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유족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우수선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기획관 장애인지원과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

<p>공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49 497 1299 694">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49 1181 1299 1585"> <thead> <tr> <th colspan="2">[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td> </tr> <tr> <td>가. 주택공급신청자</td> <td></td> </tr> <tr> <td>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td> <td></td> </tr> <tr> <td>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td> <td>(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td> </tr> <tr> <td>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td> <td>(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td> </tr> <tr> <td>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td> <td></td> </tr> <tr> <td colspan="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td> </tr> </tbody> </table>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p>청약통장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table border="1" data-bbox="249 1833 1299 1926"> <thead> <tr> <th colspan="4">입주자저축 예치금액</th> </tr>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사항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소 청약 접수 시 제출)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입주자저축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일(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지 위치도

Begin of Brilliant Dream!



3개 라인
공항철도, 인천 2호선,
서울 9호선(직결 추진중)

마곡 3정거장
공항철도
3정거장, 10분대(평일 오전 7시 기준)

여의도 7정거장
서울 9호선
7정거장, 30분대(평일 오전 7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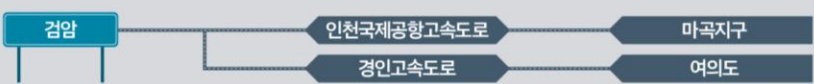
※ 본 홍보물에 반영된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 계획 및 일정은 당시와는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23호 ※ GTX-D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별첨「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2024. 01. 25) ※ 인천 2호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48호 및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아라계양로(검단시원로) 예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43호 ※ 검단-경명로간연결도로 예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98호

정거장 수만 봐도
역시, 검암역이다!

— 공항철도 — 9호선



주요 도로를 한번에,
인천, 서울 곳곳을
곧바로!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